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10. 4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9. 1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9. 23
- 라. 상정일자 : 1996. 10. 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가. 제안 이유

-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위임되어있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 자

- 현행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중 건설분야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 보완 하고 건설분야 다음에 수도분야를 신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장(대산, 해미, 운산등)이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상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임 보완하러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 현재 읍.면에는 상수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는데, 전문요원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것임.
- 답변) 앞으로 읍.면.동의 인원을 조정할 계획인바, 수도와 관련이 있는 3개 읍.면에 대하여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96 호
의결년월일	1996. . . (제 회)

서산시사무읍. 면. 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9. 10 .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96
--------	--------	----

제출년월일 : 1996. 9. 1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위임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중 건설분야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 보완하고 건설분야 다음에 수도분야를 신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코자함.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의 건설분야중 일련번호 제4 내지 제7을 삭제하고, “제8 내지 제14”를 “제4 내지 제10”으로 하며, 같은표 건설분야 다음에 수도분야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건설분야	1~3	(생 략)		건설분야	1~3	(현행과 같음)	
	<u>4</u>	상수도급수(사용) 의 허가	상 수 도 급수조례 제 46 조		<u>(삭 제)</u>	<u>(삭 제)</u>	
	<u>5</u>	동 사용허가의 취 소			<u>(삭 제)</u>		
	<u>6</u>	동 사용료의 부과			<u>(삭 제)</u>		
	<u>7</u>	동 사용료의 징수			<u>(삭 제)</u>		
	<u>8~14</u>	(생 략)			<u>4~10</u>	(현행제8 내지 제 14와 같음)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도분야	1	상수도급수(사용)의 허가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2	동 사용허가의 취소	동조례 제26조 및 제42조
	3	동 사용료의 부과	동조례 제27조
	4	동 사용료의 징수	동조례 제33조
	5	상수도 취수장·정수장 및 배수지 유지·관리(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읍·면에 한한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